

(화제의 뉴스)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시 공중선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도심지역의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구역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공동사용 구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도로 관리청의 정밀측량 등에 따라 일부 면적이 도로구역에 포함된 경우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점용허가를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만 납부하도록 보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관련 기사 및 자료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 2012. 2. 26.](#)
- ▶ [도로 점용, 고의·과실 없으면 변상금 면제 - 아시아경제 | 2012. 2. 19.](#)